

상 환 금 명 세 서(갑)

(1쪽)

기본정보

① 신고구분	정기, 수정	② 귀속 연월	년 월	③ 지급 연월	년 월	④ 일괄납부 여부	여, 부
--------	--------	---------	-----	---------	-----	-----------	------

원천공제 의무자

법인명(상호)		대표자(성명)	
사업자등록번호		사업장 소재지	
전화번호	(사업장) (대표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) * 필요한 경우 대표자 또는 업무 담 당자의 동의를 받아 기재합니다.	전자우편주소	

원천공제 명세 및 납부할 금액

(단위: 명, 원)

소득구분	코드	⑤ 원천공제 통지 인원	⑥ 원천공제 통지 금액	⑦ 원천공제 인원 합계	⑧ 원천공제 금액 합계
근로소득	14				
사업소득	13				
연금소득	17				
퇴직소득	21				
합계					

원천공제 의무자는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 내용을 제출하였으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공제 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원천공제 의무자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환급계좌정보

금융기관명		예금 종류		계좌번호	
-------	--	-------	--	------	--

작성 방법

-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원천공제 의무자는 채무자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때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① 신고구분: 정기 신고서는 "정기"에, 수정 신고서는 "수정"에 "○" 표시를 합니다.
- ② 귀속 연월: 지급된 급여의 귀속 연월을 적습니다.
- ③ 지급 연월: 급여 지급월을 적습니다.
- ④ 일괄납부 여부: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원천공제 금액을 일괄납부하는 경우에 "○" 표시를 합니다.
- ⑤ 원천공제 통지 인원 및 ⑥ 원천공제 통지 금액: 이미 수령하신 "원천공제통지서"의 인원과 매월 공제해야 할 금액을 적습니다.
- ⑦ 원천공제 인원 합계 및 ⑧ 원천공제 금액 합계: 채무자로부터 각 소득별로 원천공제한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.
- 퇴직소득은 채무자의 퇴직소득 발생 시 퇴직소득금액의 20%를 원천공제합니다.(다만,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공제하지 않습니다)

상 환 금 명 세 서(을)

(2쪽)

원천공제 의무자

법인명(상호)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-	--	---------	--

채무자별 상환 내용

일련 번호	성명	주민등록번호	① 소득 구분	② 소득구분 코드	③ 원천공제 통지액	④ 전월 미공제액	⑤ 원천 공제액	⑥ 이월 공제액	⑦ 사유 코드	⑧ 원천 공제일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			
7										
8										
9										
10										
11										
12										
13										
14										
15										
16										
17										
18										
19										
20										
21										
22										
23										
24										
25										
26										
27										
28										
29										
30										

작성 방법

1. ① 소득구분 및 ② 소득구분코드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, 퇴직소득 중 해당 소득을 적고 코드는 다음을 참고합니다.
 * 근로소득: 14, 사업소득: 13, 연금소득: 17, 퇴직소득: 21
2. ③ 원천공제 통지액: 소득별 기준에 따라 산출된, 채무자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의무상환액을 적습니다.
3. ④ 전월 미공제액: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전월에 공제하지 않았던 원천공제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⑤ 원천공제액: 공제월에 채무자로부터 공제한 의무상환액을 적습니다.
5. ⑥ 이월공제액: 그 달에 채무자로부터 공제해야하는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지 못하여 다음 달로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⑦ 사유코드: ③ 원천공제 통지액과 ④ 전월 미공제액의 합계액이 ⑤ 원천공제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아래의 사유코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.
 * 미공제 및 과소공제 사유코드: 퇴직(01), 휴직(02),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(03), 급여부족(04),
 원리금균등분할상환약정(05), 대출원리금 전액상환(06),
 공제누락(07), 과소공제(09), 채무자 미리 납부(10)
 추가공제 사유코드: 과다공제(08),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(11)
7. ⑧ 원천공제일: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날을 적습니다.